-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복지환경위원회)

충 청 남 도

(기 후 환 경 국)

목 차

〈 일 반 회 계 〉

o 기후환경정책과 ---------- 1

o 푸른하늘기획과 ---------- 11

o 환경안전관리과 ---------- 45

o 물관리정책과 ---------- 75

기 후 환 경 정 책 과

기후환경정책과

1.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 5

2. 스마트 그린도시 ····· 7

3.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차량구입 지원 ·· 9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정책사업	공감 환경정책 구현
	단위사업	환경정책 협력 강화
	세부사업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통 계 목	시설비(401-01)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50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 사업 위치 :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 사업 기간 : 2021. 1. ~ 2023.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3,000,000천원**

※ 증감 사유 : 사업비(국비)가 국회 심의과정('20.12.)에서 확보되는 등 도민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 사 업 량 :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조성(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등)

○ 지원 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연수원 조성사업 : 3,000,000천원 ○ 시설비 : 2,995,000천원 - 공사비 : 2,495,000천원 - 설계비 등 : 500,000천원 ○ 시설부대비 :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0			3,000,000	3,000,000		신규
국 비	3,000,000			3,000,000	3,000,000		국고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국비가 먼저 교부된 상황으로 도비는 향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확보 계획)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2021.하반기 (예정)	2021.하반기 (예정)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환경협력교육팀	권영택 (행) 2710	김학중 (행) 4402	유용재 (행) 4414

스마트 그린도시	정책사업	기후변화 대책추진
	단위사업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세부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기후변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 회복력 증진

○ 사업 위치 : 공주시 웅진동 259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2021 ~ 2022

○ 예 산 액 : 1,845,000천원(총사업비 중 국비 60%)

※ 증감 사유 :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구축위한 환경부 그린 뉴딜사업 공모 선정('20. 12.)

○ 사 업 량 : 빗물·하수처리수 등 재이용 저류조 설치, 자연형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물순환 생태복원 및 친환경 인프라 구축

○ 지원 근거 : 환경부 그린 뉴딜사업 공모 선정('20.12.)

[한국판뉴딜 국가프로젝트]('20.4.22, 제5차 비상경제회의)(예산규모 100조원)
① 그린(Green) + 뉴딜(New Deal)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사업 육성, SOC 디지털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 3,075,000천원(국비1,845,000 시군비1,230,000) ○ 빗물·하수처리수재이용 저류조 설치 4개소, 투수성 포장 11,493㎡, 쿨링&클린로드 2.8km, 생태습지 조성 1개소, 스마트 클린버스쉘터 설치 4개소 X 1식 = 3,07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75,000			3,075,000	3,075,000		신규
국 비	1,845,000			1,845,000	1,845,000		
도 비							
시군비	1,230,000			1,230,000	1,23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60%, 시군비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그린뉴딜팀	권영택 (2710)	공상현 (4409)	이선아 (4420)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차량구입 지원	정책사업	자연환경 보호
	단위사업	자연환경 보호
	세부사업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차량구입 지원
	통 계 목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야생동물의 원활한 구조·치료활동 지원

○ 사업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내)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

＊보 조 율 : 도비 100%

○ 사 업 량 : 부상·조난당한 야생동물 구조 차량(중고) 구입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 내용 : 야생동물 구조차량 장기대여 기간 만료(연장계약 불가)에 따른 차량 인수(구입) 지원

○ 지원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차량 구입 지원 : 10,000천원(도비 10,000) ○ 차량구입 지원 10,000	- 계약기간(4년)이 만료된 장기대여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인수(구입) 조치 (더 뉴 코란도 스포츠 / 2017년식) - 차량 미 인수시, 계약기간 내 초과 운행거리(50,019km)에 대한 부담금 (약10,000천원) 납부 및 차량 반납, 신규 차량계약(6,500천원) 등 예산 낭비초래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			10,000	10,000		단년도
국 비							
도 비	10,000			10,000	1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생태환경팀	권영택 (행) 2710	한용구 (행) 4403	안다경 (행) 4415

푸 른 하 늘 기 획 과

푸른하늘기획과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15

2.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 ····· 17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19

4. 건설기계 엔진교체 ·····21

5.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3

6.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25

7.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 27

8.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29

9.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 ··· 31

10.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33

1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5

12. 전기자동차 보급 ····· 37

13.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 39

14. 슬레이트 실태조사 ·····41

15. 국립환경보건 기초조사결과에 따른 자문 등 ····4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한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5,573,248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확정내시 변경('20.12.17.) 및 사업 수요증가에 따른 내내역 사업간 예산 변경('21.05.03.)

○ 사 업 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2,199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및 콘크리트펌프) 대상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 총사업비 : 13,010대 × 1,600천원/대 = 20,816,000천원 · 국 비 : 13,010대 × 1,600천원/대 × 60% = 12,489,600천원 · 도 비 : 13,010대 × 1,600천원/대 × 12% = 2,497,920천원 · 시군비 : 13,010대 × 1,600천원/대 × 28% = 5,828,480천원 (변경)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 총사업비 : 22,199대 × 1,600천원/대 = 35,518,400천원 · 국 비 : 22,199대 × 1,600천원/대 × 60% = 21,311,040천원 · 도 비 : 22,199대 × 1,600천원/대 × 12% = 4,262,208천원 · 시군비 : 22,199대 × 1,600천원/대 × 28% = 9,945,15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5,518,400		20,816,000	35,518,400	14,702,400		
국 비	21,311,040		12,489,600	21,311,040	8,821,440		국고
도 비	4,262,208		2,497,920	4,262,208	1,764,288		
시군비	9,945,152		5,828,480	9,945,152	4,116,672		
기 타							

* 보조율 :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875,754	13,875,754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푸른하늘기획과	미세먼지대응팀	안재수 (행) 2740	김상우 (행) 4406	임삼숙 (행) 4424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구입을 유도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415,400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확정내시 변경('20.12.17.) 및 사업 수요증가에 따른 내내역 사업간 예산 변경('21.05.03.)

○ 사 업 량 : LPG 1톤 트럭 929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4백만원 정액) 지원

○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 ○ 총사업비 : 693대 × 4,000천원/대 = 2,772,000천원 · 국 비 : 693대 × 4,000천원/대 × 50% = 1,386,000천원 · 도 비 : 693대 × 4,000천원/대 × 15% = 415,800천원 · 시군비 : 693대 × 4,000천원/대 × 35% = 970,200천원 (변경) ▣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 ○ 총사업비 : 929대 × 4,000천원/대 = 3,716,000천원 · 국 비 : 929대 × 4,000천원/대 × 50% = 1,858,000천원 · 도 비 : 929대 × 4,000천원/대 × 15% = 557,400천원 · 시군비 : 929대 × 4,000천원/대 × 35% = 1,300,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716,000		2,772,000	3,716,000	944,000		
국 비	1,858,000		1,386,000	1,858,000	472,000		국고
도 비	557,400		415,800	557,400	141,600		
시군비	1,300,600		970,200	1,300,600	330,4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573,000	1,573,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푸른하늘기획과	미세먼지대응팀	안재수 (행) 2740	김상우 (행) 4406	임삼숙 (행) 442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함으로써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361,500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확정내시 변경('20.12.17.) 및 사업 수요증가에 따른 내내역 사업간 예산 변경('21.05.03.)

○ 사 업 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8,085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포함)에 저감장치(DPF) 부착 시 보조금 지원

○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 총사업비 : 4,000대 × 3,800천원/대 = 15,200,000천원 · 국 비 : 4,000대 × 3,800천원/대 × 50% = 7,600,000천원 · 시군비 : 4,000대 × 3,800천원/대 × 50% = 7,600,000천원 (변경)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 총사업비 : 8,085대 × 3,800천원/대 = 30,723,000천원 · 국 비 : 8,085대 × 3,800천원/대 × 50% = 15,361,500천원 · 시군비 : 8,085대 × 3,800천원/대 × 50% = 15,361,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723,000		15,200,000	30,723,000	15,523,000		
국 비	15,361,500		7,600,000	15,361,500	7,761,500		국고
도 비							
시군비	15,361,500		7,600,000	15,361,500	7,761,5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862,605	3,862,605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푸른하늘기획과	미세먼지대응팀	안재수 (행) 2740	김상우 (행) 4406	임삼숙 (행) 4424

건설기계 엔진교체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함으로써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336,200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확정내시 변경('20.12.17.) 및 사업 수요증가에 따른 내내역 사업 간 예산 변경('21.05.03.)

○ 사 업 량 : 건설기계 엔진교체 438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노후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등) 대상으로 구형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지원

○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 총사업비 : 308대 × 16,500천원/대 = 5,082,000천원 · 국 비 : 308대 × 16,500천원/대 × 60% = 3,049,200천원 · 시군비 : 308대 × 16,500천원/대 × 40% = 2,032,800천원 (변경)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 총사업비 : 438대 × 16,500천원/대 = 7,227,000천원 · 국 비 : 438대 × 16,500천원/대 × 60% = 4,336,200천원 · 시군비 : 438대 × 16,500천원/대 × 40% = 2,890,8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227,000		5,082,000	7,227,000	2,145,000		
국 비	4,336,200		3,049,200	4,336,200	1,287,000		국고
도 비							
시군비	2,890,800		2,032,800	2,890,800	858,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60%, 시군비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436,199	2,436,199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푸른하늘기획과	미세먼지대응팀	안재수 (행) 2740	김상우 (행) 4406	임삼숙 (행) 4424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 사업 위치 : 충남 11개 시·군(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홍성군 제외)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10,200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확정내시 변경('20.12.17.) 및 사업 수요감소에 따른 내내역 사업 간 예산 변경('21.05.03.)

○ 사 업 량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47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11개 시군

○ 사업 내용 : 도로용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 차량)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 총사업비 : 49대 × 11,000천원/대 = 539,000천원 · 국 비 : 49대 × 11,000천원/대 × 60% = 323,400천원 · 시군비 : 49대 × 11,000천원/대 × 40% = 215,600천원 (변경)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 총사업비 : 47대 × 11,000천원/대 = 517,000천원 · 국 비 : 47대 × 11,000천원/대 × 60% = 310,200천원 · 시군비 : 47대 × 11,000천원/대 × 40% = 206,8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17,000		539,000	517,000	△ 22,000		
국 비	310,200		323,400	310,200	△ 13,200		국고
도 비							
시군비	206,800		215,600	206,800	△ 8,8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60%, 시군비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푸른하늘기획과	미세먼지대응팀	안재수 (행) 2740	김상우 (행) 4406	임삼숙 (행) 4424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등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버스·화물 경유차에 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 사업 위치 : 충남 8개 시·군(천안, 보령,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예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u>360,000천원</u>

※ 증감 사유 : 환경부 확정내시 변경('20.12.17.) 및 사업 수요감소에 따른 내내역 사업 간 예산 변경('21.05.03.)

○ 사 업 량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48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8개 시군

○ 사업 내용 : 대형버스·화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 ○ 총사업비 : 49대 × 15,000천원/대 = 735,000천원 · 국 비 : 49대 × 15,000천원/대 × 50% = 367,500천원 · 시군비 : 49대 × 15,000천원/대 × 50% = 367,500천원 (변경) ▣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 ○ 총사업비 : 48대 × 15,000천원/대 = 720,000천원 · 국 비 : 48대 × 15,000천원/대 × 50% = 360,000천원 · 시군비 : 48대 × 15,000천원/대 × 50% = 36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20,000		735,000	720,000	△ 15,000		
국 비	360,000		367,500	360,000	△ 7,500		국고
도 비							
시군비	360,000		367,500	360,000	△ 7,5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03,732	603,732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푸른하늘기획과	미세먼지대응팀	안재수 (행) 2740	김상우 (행) 4406	임삼숙 (행) 4424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LPG차 전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186,500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확정내시 변경(차량 1대당 지원 보조금 변경 5백만원 → 7백만원)으로 인한 증액('20.12.17.)

○ 사 업 량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339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보유하고 있던 경유차를 폐차하고 15인승 이하(소형) 승합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규 구입할 시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7백만원 정액) 지원

○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 총사업비 : 470대 × 5,000천원/대 = 2,350,000천원 · 국 비 : 470대 × 5,000천원/대 × 50% = 1,175,000천원 · 시군비 : 470대 × 5,000천원/대 × 50% = 1,175,000천원 (변경)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 총사업비 : 339대 × 7,000천원/대 = 2,373,000천원 · 국 비 : 339대 × 7,000천원/대 × 50% = 1,186,500천원 · 시군비 : 339대 × 7,000천원/대 × 50% = 1,186,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373,000		2,350,000	2,373,000	23,000		
국 비	1,186,500		1,175,000	1,186,500	11,500		국고
도 비							
시군비	1,186,500		1,175,000	1,186,500	11,5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75,000	375,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푸른하늘기획과	미세먼지대응팀	안재수 (행) 2740	김상우 (행) 4406	임삼숙 (행) 4424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 불법소각, 공사장,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각지대 해소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66,576천원**

※ 증감 사유 : 21년도 본예산에 사업 미추진 한 천안시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채용 (10명)

○ 사 업 량 :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21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도내 배출원 감시를 위한 민간점검단 채용

○ 지원 근거 : 미세먼지특별법 제3조 제1항

> 미세먼지특별법 제3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사업명 :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 지원사업 ○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채용 및 운용 : 2,275,116천원 · 인건비 2,000,000천원 : 2,000천원/월 × 5개월 × 200명 = 2,000,000천원 · 운영경비 275,116천원 - 피복비 200천원 × 200명 = 40,000천원, - 출장비 : 80,000천원 - 차량임차비 및 유류비 : 100,000천원, 교육비 : 50,000천원,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 5,116천원 (변경) ▣ 사업명 :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 지원사업 ○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채용 및 운용 : 2,410,116천원 · 인건비 2,000,000천원 : 2,000천원/월 × 5개월 × 210명 = 2,100,000천원 · 운영경비 310,116천원 - 피복비 200천원 × 210명 = 42,000천원, - 출장비 : 84,000천원 - 차량임차비 및 유류비 : 120,000천원, 교육비 : 55,000천원,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 9,11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10,116		2,275,116	2,410,116	135,000		
국 비	1,205,058		1,137,558	1,205,058	67,500		국고
도 비	361,518		341,268	361,518	20,250		
시군비	843,540		796,290	843,540	47,25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푸른하늘기획과	미세먼지대응팀	안재수 (행) 2740	김상우 (행) 4406	김지원 (행) 4422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 불법소각, 공사장,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각지대 해소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1.~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6,000천원

※ 증감 사유 : '21년도 본예산에 사업 미추진 한 천안시 미세먼지 감시장비 구입

○ 사 업 량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4대, 복합가스측정기 8대, 대기 시료포집용 음압상자 16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도내 배출원 감시를 위한 장비 및 물품 구입

○ 지원 근거 : 미세먼지특별법 제3조 제1항

> 미세먼지특별법 제3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사업명 :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장비 구입 지원사업 ○ 미세먼지 감시장비 구입 215,000천원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8,000천원 × 12대 = 96,000천원 · 복합가스측정기 2,000천원 × 7대 = 14,000천원 · 대기 시료포집용 음압상자 7,000천원 × 15대 = 105,000천원 (변경) ▣ 사업명 :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장비 구입 지원사업 ○ 미세먼지 감시장비 구입 240,000천원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8,000천원 × 14대 = 112,000천원 · 복합가스측정기 2,000천원 × 8대 = 16,000천원 · 대기 시료포집용 음압상자 7,000천원 × 16대 = 11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0,000		215,000	240,000	25,000		
국 비	120,000		107,500	120,000	12,500		국고
도 비	36,000		32,250	36,000	3,750		
시군비	84,000		75,250	84,000	8,75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푸른하늘기획과	미세먼지대응팀	안재수 (행) 2740	김상우 (행) 4406	김지원 (행) 4422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도민 건강보호

○ 사업 위치 : 2개 시군(천안시 차암동, 아산시 모종동)

○ 사업 기간 : 2021. 1. 1.~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34,000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반영

○ 사 업 량 : 2개소(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2개 시군(천안시, 아산시)

○ 사업 내용 : IoT기반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 회피□저감시설 지원 등 미세먼지 안심 공간 제공

○ 지원 근거 : 미세먼지특별법 제22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란 특별법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 : 400,000천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조성 : 400,000천원 ·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조성 100,000천원/곳 × 2곳 = 200,000천원 · 스마트 에어샤워 50,000천원/개 × 2개 = 100,000천원 · 부스형 미세먼지 쉼터 50,000천원/개소 × 2개소 = 100,000천원 (변경) ▣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 : 360,000천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조성 : 360,000천원 · 미세먼지 쉼터 × 1개소 = 90,000천원 / · 미세먼지 측정기 × 1개소 = 12,000천원 · 미세먼지 신호등 12,000천원/개소 × 2개소 = 24,000천원 · 에어커튼 1,500천원/개소 × 36개소 = 54,000천원 · 에어샤워 30,000천원/개소 × 6개소 = 18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60,000		400,000	360,000	△ 40,000		
국 비	180,000		200,000	180,000	△ 20,000		국고
도 비	54,000		60,000	54,000	△ 6,000		
시군비	126,000		140,000	126,000	△ 14,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푸른하늘기획과	미세먼지대응팀	안재수 (행) 2740	김상우 (행) 4406	김미영 (행) 4423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으로 매연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 사업 위치 : 천안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17,000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13대 → 15대)으로 인한 증액

○ 사 업 량 : 천연가스버스 15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도심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 또는 천연가스 자동차 대·폐차 후 재구매시 경유 자동차와의 차액을 지원

○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 156,000천원 ○ 천연가스자동차(버스) : 156,000천원 · 국 비 : 12,000천원/대 × 50% × 13대 = 78,000천원 · 도 비 : 12,000천원/대 × 15% × 13대 = 23,400천원 · 시 비 : 12,000천원/대 × 35% × 13대 = 54,600천원 (변경)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 180,000천원 ○ 천연가스자동차(버스) : 180,000천원 · 국 비 : 12,000천원/대 × 50% × 15대 = 90,000천원 · 도 비 : 12,000천원/대 × 15% × 15대 = 27,000천원 · 시 비 : 12,000천원/대 × 35% × 15대 = 63,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80,000		156,000	180,000	24,000		
국 비	90,000		78,000	90,000	12,000		
도 비	27,000		23,400	27,000	3,600		
시군비	63,000		54,600	63,000	8,4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60,000	36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푸른하늘기획과	대기환경팀	안재수 (행) 2740	고완배 (행) 4407	송원상 (행) 2743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0,610,000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승용 4,000 → 3,500대)으로 인한 감액

○ 사 업 량 : 4,810대[승용 3,500, 버스 10, 화물 1,300]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전기자동차 구매 시,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차량 구입 비용의 차액 지원

○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93,050,500천원 ○ 전기승용차 : 58,400,000 · 국 비 : 7,000 × 4,000대 = 28,000,000 · 도 비 : 3,000 × 4,000대 = 12,000,000 · 시군비 : 4,000~7,000 × 4,000대 = 18,400,000	○ 전기버스 : 2,150,000 · 국 비 : 80,000 × 10대 = 800,000 · 도 비 : 50,000 × 10대 = 500,000 · 시군비 : 85,000 × 10대 = 850,000 ○ 전기화물차 : 32,500,000 · 국 비 : 16,000 × 1,300대 = 20,800,000 · 도 비 : 2,700 × 1,300대 = 3,510,000 · 시군비 : 6,300 × 1,300대 = 8,190,000	
	(변경)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86,490,000천원 ○ 전기승용차 : 51,840,000 · 국 비 : 7,000 × 3,500대 = 24,500,000 · 도 비 : 3,000 × 3,500대 = 10,500,000 · 시군비 : 4,000~7,000 × 3,500대 = 16,840,000	○ 전기버스 : 2,150,000 · 국 비 : 80,000 × 10대 = 800,000 · 도 비 : 50,000 × 10대 = 500,000 · 시군비 : 85,000 × 10대 = 850,000 ○ 전기화물차 : 32,500,000 · 국 비 : 16,000 × 1,300대 = 20,800,000 · 도 비 : 2,700 × 1,300대 = 3,510,000 · 시군비 : 6,300 × 1,300대 = 8,19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6,490,000		93,050,000	86,490,000	-6,560,000		계속
국 비	46,100,000		49,600,000	46,100,000	-3,500,000		
도 비	14,510,000		16,010,000	14,510,000	-1,500,000		
시군비	25,880,000		27,440,000	25,880,000	-1,560,000		
기 타	0				0		

* 보조금 지원 단가 : 전기승용차 17,000천원(국 7,000, 도 3,000, 시·군 4,000~7,000)
(대당 최대 지원액) 전기 버스 215,000천원(국 80,000, 도 50,000, 시·군 85,000)
전기화물차 25,000천원(국 16,000, 도 2,700, 시·군 6,3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5,829,100	45,829,1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푸른하늘기획과	대기환경팀	안재수 (행) 2740	고완배 (행) 4407	송원상 (행) 2743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정책사업	열린환경정책구현
	단위사업	환경행정 협력 강화
	세부사업	환경보건센터운영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환경보건 현안 해결을 위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 사업 위치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603,000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교부 금액 변경(당초 300,000천원→변경 303,000천원)으로 인한 증액

○ 사 업 량 : 환경보건센터 운영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 사업 내용 : 환경성 질환 DB구축,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등

○ 지원 근거 : 환경보건법 제26조 제3항

>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 ③ 국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 600,000천원 ○ 인건비 : 153,800천원 ○ 시설장비 유지비 : 4,500천원 ○ 운영비 : 358,400천원 ○ 업무추진비 : 30,300천원 ○ 여비 : 18,000천원 ○ 분석비 : 35,000천원	
	(변경)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 603,000천원 ○ 인건비 : 153,800천원 ○ 시설장비 유지비 : 4,500천원 ○ 운영비 : 361,400천원 ○ 업무추진비 : 30,300천원 ○ 여비 : 18,000천원 ○ 분석비 : 3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03,000		600,000	603,000	3,000		
국 비	303,000		300,000	303,000	3,000		
도 비	300,000		300,000	30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푸른하늘기획과	생활환경보건팀	안재수 (행) 2740	이용숙 (행) 4408	이찬우 (행) 4429

슬레이트 실태조사	정책사업	열린환경정책구현
	단위사업	환경행정 협력 강화
	세부사업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체.철거가 필요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해 유해요인 제거 도민 건강보호

○ 사업 위치 : 도내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3.~2021.12.(신규사업)

○ 예 산 액 : 180,375천원

※ 증감 사유 :

○ 사 업 량 :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15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내 15개시군

○ 사업 내용 : 해체철거가 필요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 지원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
>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 : 277,500천원 ○ 15개 시군 실태조사 사업비 × 277,500천원 = 277,5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77,500			277,500	277,500		신규
국 비	138,750			138,750	138,750		
도 비	41,625			41,625	41,625		
시군비	97,125			97,125	97,125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푸른하늘기획과	생활환경보건팀	안재수 (행) 2740	이용숙 (행) 4408	강미화 (행) 4430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결과에 따른 자문 등	정책사업	열린환경정책구현
	단위사업	환경행정 협력 강화
	세부사업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결과 조치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대책 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4. 1. ~

○ 예 산 액 : 1,500천원(국비 100%)

○ 사 업 량 : 전문가 및 시민단체 자문회의 2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대책마련 사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이양됨에 따라 자문 회의를 통한 대책 방안 마련

○ 지원 근거 : 환경보건법 제14조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자문 등 : 1,500천원 ○ 전문가·시민단체 등 자문(2회) - 자문비 : 6명 X 100,000원 X 2회 = 1,200천원 - 교통비 : 6명 X 25,000원 X 2회 = 3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00			1,500	1,500		신규
국 비	1,500			1,500	1,500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푸른하늘기획과	생활환경보건팀	안재수 (행) 2740	이용숙 (행) 4408	이찬우 (행) 4429

환 경 안 전 관 리 과

환 경 안 전 관 리 과

1.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 49

2. 서북부권환경관리단 임시숙소 임대 지원 ···· 51

3. 유해화학·오염물질 누출 감지기 구입 등 ···· 53

4. 서북부권환경관리단 임시숙소 전세권 취득 ····· 55

5. 공주시 소각시설 설치지원 ····· 57

6. 농약빈병 회수사업 분담금 ····· 59

7. 공공의료원 장례식장 1회용기 사용 중지 ···· 61

8.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 63

9.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 65

10.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 67

11. 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 69

12. 영농폐기물 집하장 자원관리도우미 ····· 71

13. 국고보조금 반환금 ····· 73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환경오염 관리
	세부사업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통 계 목	민간자본이전 (402-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중소기업에 대하여 측정기기의 설치·유지관리·정도검사비 지원

○ 사업 위치 : 도내 TMS 부착대상 사업장

○ 사업 기간 : '21.1.1. ~ '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660,600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국고 보조금 교부확정

○ 사 업 량 : 13개소(설치비 5개소, 유지관리비 8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수질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사업장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측정기기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

○ 지원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수질 원격감시체계 구축 : 648,000천원(국·도비) ○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 24,000천원 x 7개소 = 168,000천원 ○ 설치비 - 설치 120,000천원 x 4개소 = 480,000천원 (변경) ▣ 수질 원격감시체계 구축 : 660,600천원(국·도비) ○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 22,575천원 x 8개소 = 180,600천원 ○ 설치비 - 설치 96,000천원 x 5개소 = 48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101,000		1,080,000	1,101,000	21,000		
국 비	440,400		432,000	440,400	8,400		
도 비	220,200		216,000	220,200	4,200		
시군비							
기 타	440,400		432,000	440,400	8,400		

* 보조율 : 국비 40%, 도비 20%, 기타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지도팀	송영호 (행) 2720	노재석 (행) 4433	한미선 (행) 2723

서북부권환경관리단 임시숙소 임대 지원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환경오염 관리
	세부사업	서북부권 환경관리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서북부권 환경·화학사고 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신설한 전담팀의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야간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순찰(점검)과 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함

○ 사업 위치 : 서산시 대산읍 일원

○ 사업 기간 : '21.1.1. ~ 지속 (신규, 다년도 지속운영)

○ 예 산 액 : <u>12,000천원</u>

※ 증감 사유 : 숙소 전세권 취득에서 임대(월세) 전환으로 인한 숙소 임차료 증액

○ 사 업 량 : 숙소 임대(월세) 4실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운영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취약 시간(야간 등) 환경오염 감시 및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서산시 대산읍 일원에 임시숙소 임대(월세)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기후환경국) ⑤ 환경안전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3.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 추진 4. 화학사고 시 주민지원 및 사후영향조사 추진 19.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3. 환경감시협의회 및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서북부권환경관리단 임시숙소 임대(월세) : 12,000천원 ○ 원룸 4실 임대(6개월) : 12,000천원 · 월세 500,000원 × 원룸 4실 × 6개월 = 12,000천원 * 기존(1~6월분) 임대료 예산담당관실 POOL 예산 사용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000			12,000	12,000		신규
국 비							
도 비	12,000			12,000	12,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서북부권환경관리팀	송영호 (행) 2720	오종석 (행) 6908	정광일 (행) 6944

유해화학·오염물질 누출 감지기 구입 등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환경오염 관리
	세부사업	서북부권 환경관리
	통 계 목	자산취득비(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산석유화학단지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시 시설 노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대기오염물질) 누출을 사전 확인, 개선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서북부권 환경관리단(충남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4길 26)

○ 사업 기간 : '21.1.1. ~ '21.12.31. (신규,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u>11,750천원</u>

※ 증감 사유 : 오염물질 측정기기 구입 등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증액

○ 사 업 량 : 휴대용 오염물질 누출 감지기 2기 등 구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측정용 드론 및 휴대용 측정기기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 등 누출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
>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생략 -)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 생략 -) 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유해화학 · 오염물질 누출 감지기 등 구입 : 11,750천원 ○ 오염물질 측정용 드론 배터리 구매 : 2,000천원 · 배터리 4식(2세트) : 500천원 × 4식 = 2,000천원 ○ 휴대용 오염물질 누출 감지기 : 9,750천원 ·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 오염물질 감지기 : 4,875천원 × 2식 = 9,75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1,750			11,750	11,750		신규
국 비							
도 비	11,750			11,750	11,75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서북부권환경관리팀	송영호 (행) 2720	오종석 (행) 6908	이재인 (행) 6909

서북부권환경관리단 임시숙소 전세권 취득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환경오염 관리
	세부사업	서북부권 환경관리
	통 계 목	기타자본이전(406)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서북부권 환경·화학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신설한 전담팀의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야간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순찰(점검)과 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함

○ 사업 위치 : 서산시 대산읍 일원

○ 사업 기간 : '21.1.1. ~ 지속 (신규, 다년도 지속운영)

○ 예 산 액 : 0원

※ 증감 사유 : 공동주택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한 숙소 전세권 취득에서 임대(월세) 전환으로 감액

○ 사 업 량 : 전세권 취득 없음(임대 전환)

○ 사업 내용 : 취약시간(야간 등) 환경오염 감시 및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서산시 대산읍 일원에 임시숙소 전세권 취득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기후환경국)
⑤ 환경안전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3.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 추진
4. 화학사고 시 주민지원 및 사후영향조사 추진
19.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3. 환경감시협의회 및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서북부권환경관리단 임시숙소 전세권 취득 : 200,000천원 ○ 서북부권환경관리단 숙소 전세권 취득 : 200,000천원 · 취득사유 : 환경화학사고 대응 전담팀 현장 배치에 따른 임시숙소 활용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제2020-14호, '20.04.17.) (변경) ▣ 서북부권환경관리단 임시숙소 전세권 취득 : 0원 ○ 서북부권환경관리단 숙소 임대(전세) : 0원 · 숙소 전세권 취득에서 임대(월세)로 사업 전환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200,000	0	△ 200,000		신규
국 비	0						
도 비	0		200,000		△ 200,000		
시군비	0						
기 타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2021.4월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서북부권환경관리팀	송영호 (행) 2720	오종석 (행) 6908	정광일 (행) 6944

공주시 소각시설 설치 지원	정책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	폐기물의 안정적처리 및 관리
	세부사업	소각시설 설치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여 폐기물의 안정화 및 감량화 처리효율 제고

○ 사업 위치 : 공주시

○ 사업 기간 : '18.1.1. ~ '22.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64,470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국고 보조금 교부 확정

○ 사 업 량 : 공주시(50톤/일)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소각시설 설치

○ 지원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6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공주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 토목·시설공사비 2,606,660천원(국 782,000 도 182,470 시군 1,642,19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6,197,000	11,100,000	5,097,000	2,606,660	△2,490,340	2,490,340	
국 비	4,273,000	2,842,000	1,431,000	782,000	△649,000	649,000	
도 비	1,709,500	1,163,000	546,500	182,470	△364,030	364,030	
시군비	10,214,500	7,095,000	3,119,500	1,642,190	△1,477,310	1,477,310	
기 타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7%, 시군비 63% (자부담 제외)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2020.9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팀	송영호 (행) 2720	정윤섭 (행) 4435	원종철 (행) 4451

농약빈병 회수사업 분담금	정책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	폐기물의 안정적처리 및 관리
	세부사업	폐기물수거 및 자원화
	통 계 목	기타부담금 (308-1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빈병 수거활성화로 환경오염 방지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1.1.1.~'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35,326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2021년 사업 확정

○ 사 업 량 : 7,802천개(농약빈병 6,072천개, 농약봉지류 1,730천개)

○ 사업시행방법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시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환경공단

○ 사업 내용 : 농약빈병을 수거한 농민, 단체에 수거보상금 지급(지급단가: 농약병 100원/개, 봉지 80원/개)

○ 지원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농약빈병 회수사업 분담금 : 784,420천원(국비 235,326, 도비 235,326, 한국작물보호협회 313,768)	

○ 사업계획

(단위 : 천개, 천원)

구 분	농 약 용 기 류		
	계	농약빈병류	농약봉지류
사업량	7,802천개	6,072천개	1,730천개
총사업비	784,420천원	607,200천원	177,220천원
우리도 분담액(30%)	235,326천원	182,160천원	53,166천원

※ 사업비 분담비율 : 환경부 30%, 지자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산출 기초	ㅇ 농약용기류 개당 수거·처리 단가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농약빈병 수거비 (농약유리병·플라스틱병)	농약봉지류			
		계	수거비	처리비	부대비
개 당	100	102.44	80	11.44	11

· 농약봉지류 처리비 : 환경부 고시 제2009-136호('09.8.21)「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폐농약봉지 소각처리비 526,000원/톤 적용

· 산출내역 : 526,000원/46,000개 = 11.437원(폐농약봉지 약 46개 : 1kg)

· 폐농약봉지 부대비 : 민간위탁 수거운반비 11원/개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35,326		213,938	235,326	21,388		신규
국 비							
도 비	235,326		213,938	235,326	21,388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13,938	213,938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팀	송영호 (행) 2720	정윤섭 (행) 4435	이기백 (행) 4452

공공의료원 장례식장 1회용기 사용 중지	정책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	폐기물의 안정적처리 및 관리
	세부사업	자원순환 사회 조성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공의료원 선도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조성

○ 사업 위치 : 도내 공공의료원 장례식장

○ 사업 기간 : '21.1.1.~'21.12.31.(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110,000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 및 사업 수요 증가

○ 사 업 량 : 찬기(3,600개), 밥·국(각 3,600개), 수저(4,600벌), 컵(2종, 각3,600개)

○ 사업시행방법 : 공공의료원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공의료원

○ 사업 내용 : 공공의료원 장례식장의 1회용 용기를 다회용 찬기로 교체 비용 지원

○ 지원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공공의료원 장례식장 1회용기 사용 중지 : 110,000천원(국비 40,000 도비 70,000) ○ 사업량 : 찬기(3,600개), 밥·국(각3,600개), 수저(4,600벌), 컵(2종, 각3,600개) ○ 총사업비 : 110,000천원 ※ 산출기초 - (찬기) 15,000원/개 × 3,600개 = 54,000천원 - (밥·국그릇) 4,000원/개 × 3,600개/종× 2종 = 28,800천원 - (수저) 2,000원/벌 × 4,600개 = 9,200천원 - (컵) 2,500원/개 × 3,600개/종× 2종 = 1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10,000		30,000	110,000	80,000		
국 비	40,000			40,000	40,000		
도 비	70,000		30,000	70,000	4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36.36%, 도비 63.6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팀	송영호 (행) 2720	정윤섭 (행) 4435	정황진 (행) 4448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정책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세부사업	업사이클센터 설치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새활용센터를 설치하여 고부가가치 재활용품 생산,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활용 교육을 통한 자원순환 환경교육도시 조성

○ 사업 위치 :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19 (신방공원 내)

○ 사업 기간 : '21.1.1. ~ '23.12.31. (신규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u>130,000천원</u>

※ 증감 사유 :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

○ 사 업 량 : 본관1동 연면적 1,800m^2(지하1층, 지상2층)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새활용센터 건설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기본 실시설계

○ 지원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총 5,000,000천원 중 금번 260,000천원 ○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19,200천원 ○ 기본 및 실시설계비 - 기본설계 용역 104,000천원 / 실시설계 용역 104,000천원 ○ 감리비 - 감리용역 86,000천원 ○ 건축공사 - 건축공사비 4,005,000천원 / 인테리어공사비 679,000천원 ○ 기타 - 설계보상비 20,800천원 / 인증 수수료 10,000천원 / 측량, 지방조사 1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000	19,200		260,000	260,000	4,720,800	신규
국 비	2,500,000			130,000	130,000	2,370,000	
도 비							
시군비	2,500,000	19,200		130,000	130,000	2,350,8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팀	송영호 (행) 2720	정윤섭 (행) 4435	이기백 (행) 4452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정책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세부사업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0년 집중호우에 따라 일시에 다량 발생한 재난폐기물 긴급 처리를 위한 재해복구비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외 3시군

○ 사업 기간 : '20.1. ~ '21.12.

○ 예 산 액 : 4,059,598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사업 확정 및 송금 완료(성립전예산)

○ 사 업 량 : 4개시군 재난폐기물 처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외 3시군

○ 사업 내용 :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재난폐기물 처리 1식

○ 지원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 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 4,059,598천원 - 생활폐기물 8,863톤, 임목폐기물 60톤, 부유쓰레기 2,880톤 처리	

시군명	복구지원액(천원)	폐기물 처리 예상량(톤)			
		종합	생활	임목	부유
계	4,059,598	11,803	8,863	60	2,880
천안시	81,548	1,540	1,540	-	-
아산시	1,688,050	4,883	4,823	60	-
금산군	600,000	2,000	2,000	-	-
예산군	1,690,000	3,380	500	-	2,88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59,598			4,059,598	4,059,598		성립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4,059,598			4,059,598	4,059,598		부담금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팀	송영호 (행) 2720	정윤섭 (행) 4435	엄수진 (행) 2725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정책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세부사업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사회적 재난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증가로 급증한 재활용폐기물 (플라스틱·폐비닐 등)의 선별장 재분류인력을 증원

○ 사업 위치 : 금산군 공공선별장 내

○ 사업 기간 : '21.2. ~ '21.8.

○ 예 산 액 : 26,000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사업 확정 및 송금 완료(성립전예산)

○ 사 업 량 : 금산군 자원순환센터 근로자 4명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금산군

○ 사업 내용 : 금산군 자원순환센터에 근로자 채용(4명) 후 공공선별장 배치

○ 지원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 52,000천원 · 금산군: 재활용품 품질개선 근로자 4인 * 260만원/월 * 5개월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2,000			52,000	52,000		성립전
국 비	26,000			26,000	26,000		
도 비							
시군비	26,000			26,000	26,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팀	송영호 (행) 2720	정윤섭 (행) 4435	정황진 (행) 4448

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정책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세부사업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동·단독주택의 재활용품 거점수거지점(재활용동네마당 등)에서 투명페트병 등을 분리·선별하는 도우미를 배치하여 주민을 계도하고 재활용품 품질 개선

○ 사업 위치 : 공주시 외 6시군 공동·단독주택의 재활용품 거점수거지점(재활용동네마당 등)

○ 사업 기간 : '21.5. ~ '21.12.

○ 예 산 액 : 1,923,840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

○ 사 업 량 : 재활용품 품질개선 도우미 167명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외 6시군

○ 사업 내용 : 공동·단독주택의 재활용품 거점수거지점(재활용동네마당 등)에서 재활용 불가품목 사전 선별,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계도·홍보 등을 수행하는 도우미 인력비 지원

○ 지원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재활용품 품질개선 도우미 배치사업 : 2,137,600천원 도우미 총 167명 1인당 인건비 및 운영비 1,280만원 (인건비 210만원/월*6개월, 운영비 20만원) ○ 공주시: 단독주택 품질개선 도우미 7명 ○ 보령시: 공동주택 품질개선 도우미 10명 ○ 서산시: 공동주택 품질개선 도우미 20명 ○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개선 도우미 36명 ○ 부여군: 공동주택 품질개선 도우미 8명 ○ 서천군: 단독주택 품질개선 도우미 30명 ○ 태안군: 공동주택 품질개선 도우미 16명, 단독주택 품질개선 도우미 40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137,600			2,137,600	2,137,600		신규
국 비	1,923,840			1,923,840	1,923,840		
도 비							
시군비	213,760			213,760	213,760		
기 타							

* 보조율 : 국비 90%, 시군비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팀	송영호 (행) 2720	정윤섭 (행) 4435	정황진 (행) 4448

영농폐기물 집하장 자원관리도우미	정책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세부사업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 공동집하장을 활용하여 투명페트병 등을 분리 ·선별하는 도우미를 배치하여 주민을 계도하고 재활용품 품질 개선

○ 사업 위치 : 청양군 영농폐기물 집하장

○ 사업 기간 : 2021.5~2021.12

○ 예 산 액 : 66,816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

○ 사 업 량 : 재활용품 품질개선 도우미 10명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청양군 * 15개시군 수요조사 결과 청양군, 홍성군 신청, 청양군 선정(환경부)

○ 사업 내용 : 농촌 영농폐기물 집하장 등에서 재활용 불가품목 사전 선별,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계도·홍보 등을 수행하는 도우미 인력비 지원

○ 지원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재활용품 품질개선 도우미 배치사업 : 7,424천원 도우미 총 10명 1인당 인건비 및 운영비 7,424,000원 (인건비 1,113,600원/월*6개월, 운영비 742,400원) ○ 청양군 재활용품 품질개선 도우미 10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4,240			74,240	74,240		신규
국 비	66,816			66,816	66,816		
도 비							
시군비	7,424			7,424	7,424		
기 타							

* 보조율 : 국비 90%, 시군비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팀	송영호 (행) 2720	정윤섭 (행) 4435	이기백 (행) 4452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 (신규사업)

○ 예 산 액 : 1,596,712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완화로 법적 의무대상 축소되어 사업대상 감소

○ 사 업 량 :

- 2019년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1,596,519,620원
- 2019년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 191,540원

○ 사업 내용 : 2019년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법적 근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미편성(환경부 납입고지일 : 2020. 12. 15.) (변경) ▣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 국고 집행잔액 및 이자 : 1,596,712천원 ○ 2019년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 집행잔액 : 1,596,520천원 ○ 2019년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 발생이자 : 19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96,712			1,596,712	1,596,712		신규
국 비							
도 비	1,596,712			1,596,712	1,596,712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지도팀	송영호 (행) 2720	노재석 (행) 4433	류소리 (행) 4447

물 관 리 정 책 과

물 관 리 정 책 과

1. 하천 수질개선 시범사업 ····· 79
2.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3단계 사업 ····· 81
3.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 ····· 83
4. 생태하천 복원사업 ····· 85
5.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 87
6.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 89
7.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 91
8. 7.28.~8.11. 호우피해 복구비(상수도)(성립전) ····· 94
9. 하수관거정비 ····· 96
10. 도시침수대응 ····· 99
11. 공공하수처리시설 ····· 101
12.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 104
13.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 107
1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109
15. 분뇨처리시설 ····· 111
16. 7.28.~8.11. 호우피해 복구비(하수도)(성립전) ····· 113

하천 수질개선 시범사업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수질환경 보전 관리
	세부사업	수질오염예방 및 방제훈련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하천의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통하여 하천의 오염물질 저감 및 녹조 발생 예방 등

○ 사업 위치 : 당진시

○ 사업 기간 : 2021. 5. ~ 2021. 11.(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

○ 사 업 량 : 1개 하천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

○ 사업 내용 :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정화시설 도입 및 하천 수질 모니터링 등

○ 지원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조, 제69조

○ 물환경보전법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69조(국고 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하천 수질개선 시범사업 : 200,000천원(도비 100,000, 시군비 100,000) ○ 하천 내 수질오염물질 제거시설 설치·운영 : 200,000천원(도비 100,000, 시군비 1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200,000	200,000		신규
국 비							
도 비	100,000			100,000	100,000		
시군비	100,000			100,000	10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팀	빈준수 (행) 2730	김윤섭 (행) 4461	석초희 (행) 4472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3단계 사업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수질환경 보전 관리
	세부사업	수질관리 정책개발 육성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금강정비사업 이후 보 운영에 따른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변화 우려에 따라 추진한 1~2단계 조사와 연계, 금강 전 구간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하굿둑까지 확대하여 연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 사업 위치 : 대청조정지댐 ~ 금강 하굿둑

○ 사업 기간 : 2021.1.1. ~ 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1단계) 2011년~2015년, (2단계) 2016년~2020년, **(3단계) 2021년~2025년**

○ 예 산 액 : **309,091천원**

※ 증감 사유 : 낙찰 차액

○ 사 업 량 : 수질·수생태계 모니터링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용역계약)

○ 사업시행주체 : 충남연구원

○ 사업 내용 : 금강정비사업 이후 수질, 수생태, 지형·지질 등 모니터링 실시

○ 지원 근거 : 해당없음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사업비 : 340,000천원 ○ 금강 전구간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추진 1식 (변경) ▣ 사업비 : 309,091천원 ○ 금강 전구간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추진 1식	낙찰 차액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9,091		340,000	309,091	△ 30,909		계속
국 비							
도 비	264,091		295,000	264,091	△ 30,909		
시군비							
기 타	45,000		45,000	45,000			부담금 (세종시)

* 보조율 : 도비 85%, 부담금(세종시) 15%, 3단계(2021~2025) 1차년도 사업 시작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77,707	177,707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20.9.25.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팀	빈준수 (행) 2730	김윤섭 (행) 4461	이돈우 (행) 4471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수질환경 보전 관리
	세부사업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 용역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년에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의 현황 및 이용여건에 맞는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아산 마산(신정호)저수지, 서산 잠홍저수지, 예산 예당저수지

○ 사업 기간 : 2021.7. ~ 2022.2.

○ 예 산 액 : 350,000천원

○ 사 업 량 : 중점관리저수지 3개소(마산, 잠홍, 예당저수지)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저수지 유역현황 분석,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진단, 목표수질 달성 수질개선대책 수립

○ 지원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1조의2, 제31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①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①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 : 350,000천원(도비 350,000) ○ 연구원 인건비 : 146,019천원 ○ 경비 : 157,081천원 - 여비 : 9,570천원 - 인쇄비 : 8,865천원 - 소모품, 회의 등 : 6,770천원 - 시험검사수수료 : 131,876천원 ○ 이윤 및 부가가치세 : 46,9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50,000			350,000	350,000		신규
국 비							
도 비	350,000			350,000	35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21.4.15 심의요청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물통합관리팀	빈준수 (행) 2730	도중원 (행) 4465	박명실 (행) 4473

생태하천 복원사업(전환사업)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수계 청정 관리
	세부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환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 사업 위치 : 7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68,000천원(△ 11,000,000천원)

※ 증감 사유 : 코로나19대응 관련 재원부족에 따라 기 확보 예산 재원대체(도비 → 지역개발기금)

○ 사 업 량 : 9개 하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7개 시군(천안, 아산, 서산, 당진, 금산, 서천, 예산)

○ 사업 내용 : 오염퇴적물 준설, 생태호안, 여울, 정화습지, 어도조성, 하천정비, 식생복원 등

○ 지원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조

> ○ 물환경보전법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생태하천복원사업(7개시군, 9개 하천) : 23,812,000천원(도비 11,468,000천원, 시군비 12,344,000천원) ○ 천안시(쌍정천) : 3,114,000천원(도비 1,557,000, 시군비 1,557,000) ○ 아산시(온양천) : 3,600,000천원(도비 1,800,000, 시군비 1,800,000) ○ 아산시(오목천) : 7,200,000천원(도비 3,100,000, 시군비 4,100,000) ○ 서산시(기포천등) : 3,878,000천원(도비 1,939,000, 시군비 1,939,000) ○ 당진시(남원천) : 400,000천원(도비 200,000, 시군비 200,000) ○ 당진시(시곡천) : 1,000,000천원(도비 500,000, 시군비 500,000) ○ 금산군(기사천) : 3,000,000천원(도비 1,500,000, 시군비 1,500,000) ○ 서천군(판교천) : 620,000천원(도비 372,000, 시군비 248,000) ○ 예산군(효교천) : 1,000,000천원(도비 500,000, 시군비 500,000) (변경) ▣ 생태하천복원사업 : 23,812,000천원(지역개발기금 11,000,000천원, 도비 468,000천원, 시군비 12,34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9,214,000		23,812,000	23,812,000	0	76,402,000	
지역개발기금				11,000,000	11,000,000		
도 비	37,407,000		11,468,000	468,000	△11,000,000	36,939,000	
시군비	51,807,000		12,344,000	12,344,000	0	39,463,000	
기 타							

* 보조율 : 2012~2013년 국비60%, 시군비40% / 2014년이후 국비50%, 시군비50% / 2020년 도비50%, 시군비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1,964,000	11,964,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유역관리팀	빈준수 (행) 2730	이형구 (행) 4462	황효성 (행) 4475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수계 청정 관리
	세부사업	축산악취 개선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축사 이전·휴업으로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 사업 위치 : 내포신도시 주변 5km이내 삽교천, 용봉천, 609호 지방도 내

○ 사업 기간 : 2021. 1. ~ 2021.12.

○ 예 산 액 : 1,958,800천원(중 758,800천원)

※ 증감 사유 : 2021년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 추진계획('21.3.)에 따라 내포신도시 주변 노후 축사의 이전·휴업 추진, 근본적인 악취 해결을 위해 시군 감정평가 결과 반영 도비 추가 계상

○ 사 업 량 : 축산농가 4개소(홍성 2, 예산 2)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 예산군

○ 사업 내용 :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및 축사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 시행조례」 제19조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 시행조례」 제19조(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개발예정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축사를 이전·폐업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 2,400,000천원(도비 1,200,000천원, 군비 1,200,000천원) ○ 영업손실보상, 시설보상, 시설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기타(감정평가, 설계용역) - 홍성군(2개소) : 2,194,000천원(도비 1,097,000천원, 군비 1,097,000) - 예산군(2개소) : 206,000천원(도비 103,000천원, 군비 103,000천원) (변경) ▣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3,917,600천원(도비 1,958,800천원, 군비 1,958,800천원) ○ 영업손실보상, 시설보상, 시설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기타(감정평가, 설계용역) - 홍성군(2개소) : 3,552,600천원(도비 1,776,300천원, 군비 1,776,300천원) - 예산군(2개소) : 365,000천원(도비 182,500천원, 군비 182,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960,000		2,400,000	3,917,600	1,517,600	2,042,400	
국 비							
도 비	2,980,000		1,200,000	1,958,800	758,800	1,021,200	
시군비	2,980,000		1,200,000	1,958,800	758,800	1,021,2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90,000	235,185	4,815	81.1%	50,0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유역관리팀	빈준수 (행) 2730	이형구 (행) 4462	황효성 (행) 4475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세부사업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수돗물 유충 사고 등 수돗물 수질사고와 관련하여 정수장의 위생관리 방안 조치

○ 사업 위치 : 6개 시군(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

○ 사업 기간 : 2021.1. ~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763,000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액(당초 예산액 가내시 반영)

○ 사 업 량 : 정수장 및 배수지 10개 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6개 시군(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

○ 사업 내용 :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보수

○ 지원 근거 : 수도법 제2조, 제75조

> 수도법 제2조(책무)
>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 1,400,000천원(국비 700,000, 시군비 700,000) ○ 3개 시군(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 1,400,000천원 · 천안시 - 병천정수장 여과지 밀폐화 = 1,104,000천원 · 공주시 - 유구정수장 밀폐형으로 교체 = 276,000천원 · 보령시 - 창동정수장 방충 덮개 설치 = 20,000천원	

	(변경) ▣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 3,526,000천원(국비 1,763,000, 시군비 1,763,000) ○ 6개 시군(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 : 3,526,000천원 · 천안시 – 병천정수장 여과지 밀폐화 = 1,104,000천원 · 공주시 – 유구정수장 밀폐형으로 교체 = 276,000천원 · 보령시 – 창동정수장 방충 덮개 설치 = 20,000천원 · 논산시 – 논산·강경배수지 STS라이닝 = 432,000천원 · 부여군 – 장암배수지 방수시트 시공 = 430,000천원 · 예산군 – 예산·삽교배수지 및 덕산 정수장·배수지 시설보수 = 1,26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830,000		1,400,000	3,526,000	2,126,000	2,304,000	신규
국 비	2,915,000		700,000	1,763,000	1,063,000	1,152,000	국고
도 비							
시군비	2,915,000		700,000	1,763,000	1,063,000	1,152,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빈준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최우선 (행) 4480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세부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ICT를 활용한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 및 신속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1. ~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6,482,000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감액(당초 예산액 가내시 반영)

○ 사 업 량 : 15개 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유역수도지원센터 구축운영,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 지원 근거 : 수도법 제2조, 제75조

> 수도법 제2조(책무)
>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 63,922,000천원(국비 44,749,000, 시군비 19,173,000) ○ 15개 시군 · 천안시 : 4,670,000천원 · 공주시 : 1,825,000천원 · 보령시 : 2,056,000천원	

	· 아산시 : 11,044,000천원 · 서산시 : 13,345,000천원 · 논산시 : 7,839,000천원 · 계룡시 : 5,235,000천원 · 당진시 : 2,338,000천원 · 금산군 : 5,224,000천원 · 부여군 : 2,375,000천원 · 서천군 : 1,768,000천원 · 청양군 : 878,000천원 · 홍성군 : 2,249,000천원 · 예산군 : 1,361,000천원 · 태안군 : 1,715,000천원 (변경)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 52,114,000천원(국비 36,482,000, 시군비 15,632,000) ○ 15개 시군 · 천안시 : 5,816,000천원 · 공주시 : 2,271,000천원 · 보령시 : 2,560,000천원 · 아산시 :11,741,000천원 · 서산시 : 4,394,000천원 · 논산시 : 7,502,000천원 · 계룡시 : 885,000천원 · 당진시 : 2,911,000천원 · 금산군 : 1,152,000천원 · 부여군 : 2,957,000천원 · 서천군 : 2,203,000천원 · 청양군 : 1,093,000천원 · 홍성군 : 2,800,000천원 · 예산군 : 1,695,000천원 · 태안군 : 2,13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8,429,000	12,627,000	63,922,000	52,114,000	△ 11,808,000	23,688,000	
국 비	61,905,000	8,839,000	44,749,000	36,482,000	△ 8,267,000	16,584,000	국고
도 비							
시군비	26,524,000	3,788,000	19,173,000	15,632,000	△ 3,541,000	7,104,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시군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빈준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최우선 (행) 4480

7.28.~8.11. 호우피해 복구비(상수도)(성립전)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세부사업	7.28.~8.11. 호우피해 복구비(상수도)(성립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0. 7. ~ 8. 발생한 상수도 호우피해 복구

○ 사업 위치 :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1.1. ~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7,315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교부(행정안전부 신규 편성)

○ 사 업 량 : 3개 지구(갈매배수지, 회룡2리·유곡3리 소규모수도시설)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상수도 호우피해시설 복구

○ 지원 근거 : 수도법 제2조, 제75조

수도법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7.28.~8.11. 호우피해 복구비(상수도) (변경) ▣ 7.28.~8.11. 호우피해 복구비(상수도) : 204,920천원(국비 87,315 시군비 117,605) ○ 1개 시군(아산시) · 갈매배수지 = 127,050천원 · 회룡2리 소규모수도시설 = 49,181천원 · 유곡3리 소규모수도시설 = 28,689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4,920			204,920	204,920		신규
국 비	87,315			87,315	87,315		국고
도 비							
시군비	117,605			117,605	117,605		
기 타							

* 보조율 : 국비 43%, 시군비 57%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빈준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최우선 (행) 4480

하수관거정비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관리
	단위사업	하수도관리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정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하수도 확충으로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개선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

○ 사업 위치 : 14개 시·군(청양군 제외)

○ 사업 기간 : 2021.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0,477,000천원

※ 증감 사유 :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환경부 국고 보조금 내역조정(2021.3) 반영

○ 사 업 량 : 51개 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4개 시·군(청양군 제외)

○ 사업 내용 :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

○ 지원 근거 : 하수도법 제3조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하수관거정비 : 142,688,000천원 (국비 92,867,000, 시군비 49,821,000) ○ 천안시 : 67,719,000천원 (국비 42,954,000, 시군비 24,765,000) ○ 공주시 : 658,000천원 (국비 329,000, 시군비 329,000) ○ 보령시 : 2,336,000천원 (국비 1,611,000, 시군비 725,000) ○ 아산시 : 12,220,000천원 (국비 7,390,000, 시군비 4,830,000) ○ 서산시 : 6,818,000천원 (국비 4,363,000, 시군비 2,455,000) ○ 논산시 : 1,519,000천원 (국비 1,063,000, 시군비 456,000) ○ 당진시 : 8,179,000천원 (국비 5,685,000, 시군비 2,494,000) ○ 금산군 : 5,463,000천원 (국비 3,666,000, 시군비 1,797,000) ○ 부여군 : 3,672,000천원 (국비 2,534,000, 시군비 1,138,000) ○ 서천군 : 3,178,000천원 (국비 2,105,000, 시군비 1,073,000) ○ 홍성군 : 3,962,000천원 (국비 2,719,000, 시군비 1,243,000) ○ 예산군 : 26,964,000천원 (국비 18,448,000, 시군비 8,516,000) (변경) ▣ 하수관거정비 : 139,161,000천원 (국비 90,477,000, 시군비 48,684,000) ○ 천안시 : 60,892,000천원 (국비 38,559,000, 시군비 22,333,000) ○ 공주시 : 1,442,000천원 (국비 721,000, 시군비 721,000) ○ 보령시 : 5,618,000천원 (국비 3,821,000, 시군비 1,797,000) ○ 아산시 : 9,746,000천원 (국비 7,349,000, 시군비 2,397,000) ○ 서산시 : 2,991,000천원 (국비 1,669,000, 시군비 1,322,000) ○ 논산시 : 3,714,000천원 (국비 2,600,000, 시군비 1,114,000) ○ 계룡시 : 810,000천원 (국비 405,000, 시군비 405,000) ○ 당진시 : 7,481,000천원 (국비 4,985,000, 시군비 2,496,000) ○ 금산군 : 5,728,000천원 (국비 3,762,000, 시군비 1,966,000) ○ 부여군 : 3,672,000천원 (국비 2,534,000, 시군비 1,138,000) ○ 서천군 : 3,178,000천원 (국비 2,105,000, 시군비 1,073,000) ○ 홍성군 : 5,326,000천원 (국비 2,719,000, 시군비 2,607,000) ○ 예산군 : 26,963,000천원 (국비 18,448,000, 시군비 8,515,000) ○ 태안군 : 1,600,000천원 (국비 800,000, 시군비 8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686,570,000	171,840,000	143,904,000	139,161,000	△ 4,743,000	1,375,569,000	
국 비	1,097,310,000	111,440,000	92,867,000	90,477,000	△ 2,390,000	895,393,000	
도 비							
시군비	589,260,000	60,400,000	51,037,000	48,684,000	△ 2,353,000	480,176,000	
기 타							

* 보조율 : 신설(국비 70%, 시군비 30%), 교체·보수(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4,995,000	64,893,000	102,000	99.8%		국비미교부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빈준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조호범 (행) 2734

도시침수대응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관리
	단위사업	하수도관리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도시침수대응)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하수도 확충으로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개선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

○ 사업 위치 : 2개 시군(천안시,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1.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448,700천원

※ 증감 사유 :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 사 업 량 : 2개 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2개 시군(천안시, 아산시)

○ 사업 내용 : 상습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관로정비, 하수저류시설, 펌프장 설치사업

○ 지원 근거 : 하수도법 제3조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도시침수대응 : 5,468,000천원 (국비 3,828,000, 도비 492,000, 시군비 1,148,000) ○ 천안시 : 3,041,000천원 (국비 2,129,000, 도비 273,600, 시군비 638,400) ○ 아산시 : 2,427,000천원 (국비 1,699,000, 도비 218,400, 시군비 509,600) (변경) ▣ 도시침수대응 : 6,897,000천원 (국비 4,828,000, 도비 620,700, 시군비 1,448,300) ○ 천안시 : 4,470,000천원 (국비 3,129,000, 도비 402,300, 시군비 938,700) ○ 아산시 : 2,427,000천원 (국비 1,699,000, 도비 218,400, 시군비 509,6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3,510,000	17,470,000	5,468,000	6,897,000	1,429,000	79,143,000	
국 비	72,460,000	12,230,000	3,828,000	4,828,000	1,000,000	55,402,000	
도 비	9,315,000	1,572,000	492,000	620,700	128,700	7,122,300	
시군비	21,735,000	3,668,000	1,148,000	1,448,300	300,300	16,618,7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990,000	7,99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빈준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조호범 (행) 2734

공공하수처리시설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관리
	단위사업	하수도관리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하수도 확충으로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개선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

○ 사업 위치 : 11개 시군(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4,695,500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국고 보조금 내역조정(2021.3) 반영

○ 사 업 량 : 14개 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1개 시군(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이상) 신·증설

○ 지원 근거 : 하수도법 제3조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하수처리시설 : 27,989,000천원 (국비 16,396,000, 도비 5,637,500, 시군비 5,955,500) ○ 천안시 : 10,293,000천원 (국비 5,049,000, 도비 2,524,500, 시군비 2,719,500) ○ 보령시 : 1,250,000천원 (국비 874,000, 도비 188,000, 시군비 188,000) ○ 아산시 : 3,631,000천원 (국비 2,490,000, 도비 535,000, 시군비 606,000) ○ 논산시 : 3,466,000천원 (국비 2,426,000, 도비 520,000, 시군비 520,000) ○ 계룡시 : 1,200,000천원 (국비 840,000, 도비 180,000, 시군비 180,000) ○ 당진시 : 600,000천원 (국비 300,000, 도비 150,000, 시군비 150,000) ○ 부여군 : 993,000천원 (국비 694,000, 도비 149,500, 시군비 149,500) ○ 홍성군 : 715,000천원 (국비 500,000, 도비 107,500, 시군비 107,500) ○ 예산군 : 1,799,000천원 (국비 1,223,000, 도비 262,000, 시군비 314,000) ○ 태안군 : 4,042,000천원 (국비 2,000,000, 도비 1,021,000, 시군비 1,021,000) (변경) ▣ 하수처리시설 : 18,646,000천원 (국비 11,051,000, 도비 3,644,500, 시군비 3,950,500) ○ 천안시 : 6,259,000천원 (국비 3,338,000, 도비 1,383,000, 시군비 1,538,000) ○ 보령시 : 1,248,000천원 (국비 874,000, 도비 188,000, 시군비 186,000) ○ 아산시 : 3,078,000천원 (국비 2,104,000, 도비 451,500, 시군비 522,500) ○ 논산시 : 1,429,000천원 (국비 1,000,000, 도비 214,500, 시군비 214,500) ○ 계룡시 : 344,000천원 (국비 241,000, 도비 51,500, 시군비 51,500) ○ 당진시 : 600,000천원 (국비 300,000, 도비 150,000, 시군비 150,000) ○ 부여군 : 67,000천원 (국비 47,000, 도비 10,500, 시군비 9,500) ○ 서천군 : 600,000천원 (국비 300,000, 도비 150,000, 시군비 150,000) ○ 홍성군 : 143,000천원 (국비 100,000, 도비 21,500, 시군비 21,500) ○ 예산군 : 1,798,000천원 (국비 1,223,000, 도비 262,000, 시군비 313,000) ○ 태안군 : 3,080,000천원 (국비 1,524,000, 도비 762,000, 시군비 794,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89,500,000	72,710,000	27,989,000	18,646,000	△ 9,343,000	298,144,000	
국 비	229,600,000	44,000,000	16,396,000	11,051,000	△ 5,345,000	174,549,000	
도 비	77,757,000	13,961,000	5,637,500	3,644,500	△ 1,993,000	60,151,500	
시군비	82,143,000	14,749,000	5,955,500	3,950,500	△ 2,005,000	63,443,500	
기 타							

* 보조율 : 면지역(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읍이상(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5,664,000	35,664,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빈준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조호범 (행) 2734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관리
	단위사업	하수도관리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하수도 확충으로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개선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

○ 사업 위치 : 충남 천안시 등 12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5,416,000천원**

※ 증감 사유 :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환경부 국고 보조금 내역조정(2021.3) 반영

○ 사 업 량 : 56개 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2개 시군(보령시, 계룡시, 홍성군 제외)

○ 사업 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미만) 신·증설

○ 지원 근거 : 하수도법 제3조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농어촌마을 : 23,627,000천원 (국비 16,207,000, 도비 3,502,500, 시군비 3,917,500) ○ 천안시 : 4,719,000천원 (국비 3,277,000, 도비 721,000, 시군비 721,000) ○ 공주시 : 5,998,000천원 (국비 4,016,000, 도비 861,000, 시군비 1,121,000) ○ 아산시 : 932,000천원 (국비 617,000, 도비 133,000, 시군비 182,000) ○ 서산시 : 1,142,000천원 (국비 798,000, 도비 172,000, 시군비 172,000) ○ 논산시 : 352,000천원 (국비 246,000, 도비 53,000, 시군비 53,000) ○ 당진시 : 1,708,000천원 (국비 1,161,000, 도비 248,500, 시군비 298,500) ○ 금산군 : 3,045,000천원 (국비 2,127,000, 도비 459,000, 시군비 459,000) ○ 부여군 : 3,006,000천원 (국비 2,100,000, 도비 453,000, 시군비 453,000) ○ 서천군 : 358,000천원 (국비 250,000, 도비 54,000, 시군비 54,000) ○ 청양군 : 904,000천원 (국비 619,000, 도비 134,000, 시군비 151,000) ○ 예산군 : 1,161,000천원 (국비 785,000, 도비 168,500, 시군비 207,500) ○ 태안군 : 302,000천원 (국비 211,000, 도비 45,500, 시군비 45,500) (변경) ▣ 농어촌마을 : 31,171,000천원 (국비 20,911,000, 도비 4,505,000, 시군비 5,755,000) ○ 천안시 : 3,817,000천원 (국비 2,645,000, 도비 585,000, 시군비 587,000) ○ 공주시 : 8,371,000천원 (국비 5,269,000, 도비 1,128,500, 시군비 1,973,500) ○ 아산시 : 1,282,000천원 (국비 837,000, 도비 179,500, 시군비 265,500) ○ 서산시 : 3,498,000천원 (국비 2,448,000, 도비 525,000, 시군비 525,000) ○ 논산시 : 351,000천원 (국비 246,000, 도비 53,000, 시군비 52,000) ○ 당진시 : 2,748,000천원 (국비 1,861,000, 도비 398,500, 시군비 488,500) ○ 금산군 : 3,038,000천원 (국비 2,127,000, 도비 459,000, 시군비 452,000) ○ 부여군 : 3,587,000천원 (국비 2,415,000, 도비 518,500, 시군비 653,500) ○ 서천군 : 1,001,000천원 (국비 700,000, 도비 150,500, 시군비 150,500) ○ 청양군 : 1,256,000천원 (국비 857,000, 도비 184,500, 시군비 214,500) ○ 예산군 : 1,028,000천원 (국비 695,000, 도비 149,000, 시군비 184,000) ○ 태안군 : 1,194,000천원 (국비 811,000, 도비 174,000, 시군비 209,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33,750,000	63,460,000	23,627,000	31,171,000	7,544,000	239,119,000	
국 비	229,820,000	44,410,000	16,207,000	20,911,000	4,704,000	164,499,000	
도 비	49,059,000	8,992,000	3,502,500	4,505,000	1,002,500	35,562,000	
시군비	54,871,000	10,058,000	3,917,500	5,755,000	1,837,500	39,058,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2,431,000	22,431,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빈준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조호범 (행) 2734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관리
	단위사업	하수도관리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하수도 확충으로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개선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

○ 사업 위치 : 5개 시군(보령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4,275,500천원

※ 증감 사유 :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환경부 국고 보조금 내역조정(2021.3) 반영

○ 사 업 량 : 8개 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5개 시군(보령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 사업 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미만) 신·증설

○ 지원 근거 : 하수도법 제3조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면단위하수처리 : 13,571,000천원 (국비 9,255,000, 도비 1,985,500, 시군비 2,330,500) ○ 아산시 : 678,000천원 (국비 474,000, 도비 102,000, 시군비 102,000) ○ 당진시 : 9,775,000천원 (국비 6,599,000, 도비 1,415,500, 시군비 1,760,500) ○ 금산군 : 2,325,000천원 (국비 1,627,000, 도비 349,000, 시군비 349,000) ○ 부여군 : 793,000천원 (국비 555,000, 도비 119,000, 시군비 119,000) (변경) ▣ 면단위하수처리 : 17,582,000천원 (국비 11,755,000, 도비 2,520,500, 시군비 3,306,500) ○ 보령시 : 6,070,000천원 (국비 3,938,000, 도비 844,000, 시군비 1,288,000) ○ 논산시 : 1,858,000천원 (국비 1,200,000, 도비 258,000, 시군비 400,000) ○ 당진시 : 6,536,000천원 (국비 4,435,000, 도비 950,500, 시군비 1,150,500) ○ 금산군 : 2,325,000천원 (국비 1,627,000, 도비 349,000, 시군비 349,000) ○ 부여군 : 793,000천원 (국비 555,000, 도비 119,000, 시군비 119,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97,060,000	52,610,000	13,571,000	17,582,000	4,011,000	126,868,000	
국 비	135,420,000	36,820,000	9,255,000	11,755,000	2,500,000	86,845,000	
도 비	28,356,000	7,264,000	1,985,500	2,520,500	535,000	18,571,500	
시군비	33,284,000	8,526,000	2,330,500	3,306,500	976,000	21,451,5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4,454,000	14,454,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빈준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조호범 (행) 273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하수도 관리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농·공업용수로 활용

○ 사업 위치 : 6개 시군(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 사업 기간 : 2021. 1.~ 2021.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569,000천원

※ 증액 사유 : 국회 증액사업(홍성하수재이용) 국비 3.18억 교부확정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재이용시설 109.1천㎥/일 및 공급관로 61.5㎞, 10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6개 시군(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 아산시는 '21년도 반영예산 없음

○ 사업 내용 :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 및 공급관로 설치

○ 지원 근거 :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2항

>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8,933,000천원(국 6,251,000 시군 2,682,000) ○ 4개 시군 7지구(계속 5, 신규 2) 재이용시설 80천㎥/일 및 공급관로 52.8㎞ · 천안시 : 2,330,000천원(국 1,630,000, 시 700,000) · 보령시 : 4,180,000천원(국 2,926,000, 시 1,254,000) · 서산시 : 287,000천원(국 200,000, 시 87,000) · 예산군 : 2,136,000천원(국 1,495,000, 시 641,000)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9,567,000천원(**국 6,569,000** 시군 2,998,000) ○ 5개 시군 8지구(계속 6, 신규 2) 재이용시설 109.1천㎥/일 및 공급관로 61.5㎞ · 천안시 : 1,757,000천원(국 1,230,000, 시 527,000) · 보령시 : 4,180,000천원(국 2,926,000, 시 1,254,000) · 서산시 : 858,000천원(국 600,000, 시 258,000) · 홍성군 : 636,000천원(국 318,000, 시 318,000) · 예산군 : 2,136,000천원(국 1,495,000, 시 641,000) ※ 국회 증액사업(홍성하수재이용) 국비 3.18억 교부확정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8,210,000	35,350,000	8,931,000	9,569,000	636,000	53,291,000	
국 비	67,860,000	24,620,000	6,251,000	6,569,000	**318,000**	36,671,000	국고
시군비	30,350,000	10,730,000	2,682,000	3,000,000	**318,000**	16,62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시군비 30% (도청 소재지,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942,000**	2,942,000	-	100%	-	국고 교부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물통합관리팀	빈준수 (행) 2730	도중원 (행) 4465	강동훈 (행) 2735

분뇨처리시설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관리
	단위사업	하수도관리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분뇨처리시설)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하수도 확충으로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개선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

○ 사업 위치 : 3개 시군(공주시, 서천군,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29,000천원

※ 증감 사유 : 환경부 국고 보조금 내역조정(2021.3) 반영

○ 사 업 량 : 3개 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3개 시군(공주시, 서천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분뇨처리시설 증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 지원 근거 : 하수도법 제3조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분뇨처리시설 : 3,448,000천원 (국비 1,724,000, 시군비 1,724,000) ○ 공주시 : 244,000천원 (국비 122,000, 시군비 122,000) ○ 서천군 : 2,756,000천원 (국비 1,378,000, 시군비 1,378,000) ○ 태안군 : 448,000천원 (국비 224,000, 시군비 224,000) (변경) ▣ 분뇨처리시설 : 1,658,000천원 (국비 829,000, 시군비 829,000) ○ 공주시 : 200,000천원 (국비 100,000, 시군비 100,000) ○ 서천군 : 1,258,000천원 (국비 629,000, 시군비 629,000) ○ 태안군 : 200,000천원 (국비 100,000, 시군비 1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940,000	4,990,000	3,448,000	1,658,000	△ 1,790,000	7,292,000	
국 비	6,970,000	2,490,000	1,724,000	829,000	△ 895,000	3,651,000	
도 비							
시군비	6,970,000	2,500,000	1,724,000	829,000	△ 895,000	3,641,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544,000	1,544,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빈준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조호범 (행) 2734

7.28.~8.11. 호우피해 복구비(하수도)(성립전)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관리
	단위사업	하수도관리
	세부사업	7.28.~8.11.호우피해 복구비(하수도)(성립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0. 7. ~ 8. 발생한 하수도 호우피해 복구

○ 사업 위치 : 3개 시군(아산시, 금산군, 예산군)

○ 사업 기간 : 2021.1. ~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05,011천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교부(행정안전부 신규 편성)

○ 사 업 량 : 3개 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3개 시군(아산시, 금산군, 예산군)

○ 사업 내용 : 하수도 호우피해시설 복구

○ 지원 근거 : 하수도법 제3조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7.28.~8.11.호우피해복구(하수도) : 662,318천원 (국비 305.011, 시군비 357,307) ○ 아산시 : 354,484천원 (국비 151,043, 시군비 203,441) ○ 금산군 : 50,625천원 (국비 20,015, 시군비 30,610) ○ 예산군 : 257,209천원 (국비 133,953, 시군비 123,256)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62,318			662,318	662,318		
국 비	305,011			305,011	305,011		
도 비							
시군비	357,307			357,307	357,307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빈준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조호범 (행) 2734